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전단 중 “신고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4개월 이내(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)에 10억원의 범위에서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”를 “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 금액과”로, “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”를 “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급기준”을 “지급시기, 절차 및 기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고자등의 포상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시행일 이전 신고자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 전에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가 명시적으로 희망할 경우 제3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3조(신고자등에 대한 포상) ①		제33조(신고자등에 대한 포상) ①		
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		-----		
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		-----		
른 <u>신고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</u>		-- <u>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</u>		
<u>결한 날부터 4개월 이내(특별한</u>		<u>금 금액과</u> -----		
<u>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)</u>		-----		
<u>에 10억원의 범위에서 신고된</u>		-----		
<u>위반행위의 중요도와 위반행위</u>		-----		
<u>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</u>		-----		
<u>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</u>		-----		
<u>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</u>		-- <u>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		
<u>액 등을 심의·의결하여야 한</u>		<u><후단 삭제></u>		
<u>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심</u>				
<u>의·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</u>				
<u>포상금을 지급한다.</u>				
② 그 밖에 포상금 <u>지급기준</u> 등		② ----- <u>지급시기, 절</u>		
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		<u>차 및 기준</u> -----		
금융위원회가 정한다.		-----.		